행정자치부

시 정 요 구

- 제 목 정직·강등 및 직위해제처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기 과 명 경기도
- 관계기관 경기도 본청, 과천시, 광명시, 광주시, 김포시, 부천시, 성남시, 안산시, 안성시, 양주시, 여주시, 연천군, 용인시, 의정부시, 이천시, 하남시, 화성시

내 용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강등·정직·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

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「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」제18조에 따르면, 결근일수·정직일수·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, 휴직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*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를 공 제하며,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 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※ 휴직한 경우 연가일수 산출: [해당연도 휴직기간(개월)/12개월] × 해당연도 연가일수

그러나 경기도 본청과 16개 시·군에서는 정직(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)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

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위 조례에 따라 연가일수를 공제하도록 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아 연가일수가 없음에도 연가 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,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 미감액 등총 69,252,160원의 봉급 및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보수 등에 낭비를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, 과천시장, 광명시장, 광주시장, 김포시장, 부천시장, 성남시장, 안산시장, 안성시장, 양주시장, 여주시장, 연천군수, 용인시장, 의정부시장, 이천시장, 하남시장, 화성시장은

징계(정직·강등)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연가일수 미공제, 결근일수에 대한 봉급 미감액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 69,252,160원([확인서]에 따른 기관별 해당액)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, 향후 징계처분(정직·강등) 및 직위해제처분 등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